성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성주군수

2. 개정이유

○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(대통령령 제22982호, 2011.6.27 일부개정)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의 의무 예치비율을 조정하고, 재난관리기금 용도를 법령에서 정한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기금사용 용도를 새로이 정하기 위하여 위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법정적립액 의무예치비율 조정 : 종전 30%에서 15%로 하향(안 제3조)

▪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이상 금액을 금융기관에 예치

나.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」개정에 따라 기금사용 용도 신설 (안 제6조 5~9호)

▪ 「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」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 저감시설 보수·보강

▪ 재난예보 · 경보시설의 설치 · 보수 · 보강

▪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

▪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조사 · 연구 등

4. 관련법률

○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제74조 및 제75조

5. 검토의견

□ 제출자, 개정이유, 주요내용, 관련법령은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.

□ 본 개정조례안은

○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」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의 의무예치비율을 종전 30%에서 15%로 하향조정하여 재해관련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늘리고,

○「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」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 저감시설 보수·보강, 재난예보·경보시설의 설치·보수·보강 등 사전 재해예방을 위하여 기금의 사용 용도를 추가로 신설, 자연재해로부터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토록 하는 개정사항으로서 자치입법 입안심사기준에 합당하므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